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김진표
장 관

◎法律 第7025號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

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당해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 2의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제54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8조제1항·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경우

제186조의2제2항중 “目的·商號·사업내용·財務에 관한 사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목적·상호·사업내용·임원보수(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6조의5중 “第8條第2項”을 “제8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9장제2절에 제18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8조의6(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①이 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및 소속회사는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

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중 “2分の 1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91조의19의 제목 “(대형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래를”을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지행위

- 가.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 나. 부동산·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2. 금지행위의 예외

- 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 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 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제192조의3제1항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株主에게 理事會決議로써 金錢으로 利益配當(이하 “中間配當”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정한 날”을 “말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中間配當金”을 각각 “분기배당금”으

로, “1月”을 “20일”로 한다.

제192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中間配當”을 “분기배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中間配當”을 “분기배당”으로, “利益準備金”을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中間配當”을 “분기배당”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中間配當”을 “분기배당”으로, “中間配當額”을 각각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中間配當”을 “분기배당”으로, “일정한 날”을 “말일”로 하고, 동조제8항중 “中間配當”을 “분기배당”으로 한다.

제207조의3제1호중 “제8조”를 “제8조(동조제4항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허위의 기재를 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와 그 누락된 사실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며, 동조에 제2호의2·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한 자

6. 제188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8호중 “제191조의11제2항 또는 제191조의19제1항”을 “제191조의11제2항”으로 한다.

5. 제188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7. 제191조의1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서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제1항(제25조의3제1항·제186조제4항·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및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19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분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증권거래법 개정이유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하여도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나.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법 제54조의6제2항).
-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57조).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보수를 기재하도록 함(법 제186조의2).

마. 불공정 증권거래행위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8조의6 신설).

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하여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91조의19제1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3년12월31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